


서울특별시

우100-744 서울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 전화 (02) 731-6156-8 / 전송 731-6562
 처리부서 : 법무담당관실(시정본관 3층) 담당 김철수

문서번호 법무 11010-
 시행일자 1996. 11. 1996. 11. 02
 (경유) (제1안)
 수신 내부결재
 참조

취급		시	장
보존			
기획관리실장	전결		
법무 담당관			
법계계장			
기안	김철수		합조

제목 기술용역에대한기술및가격동시입찰운영기준 발령

1. 기술용역에대한기술및가격동시입찰운영기준을 붙임과 같이 시보에 게재하여 발령하고자 합니다.

첨부 예규안 각 1부. 끝.

(제2안)

예규 제 626 호

수신 공보담당관

제목 예규 시보게재

1. 기술용역에대한기술및가격동시입찰운영기준을 시보에 게재하여 발령하기 바람.

첨부 서울특별시예규 제626호. 끝.

서울특별시장

(제3안)

수신 회계과장

제목 예규발령 통보

1. 기술용역에대한기술및가격동시입찰운영기준을 시보에 게재하여 발령토록 조치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기 바람.

가. 발령예정일 : 1996. 11. 5.

첨부 서울특별시예규 제626호(생략). 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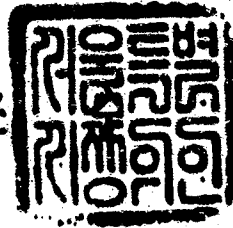
서울특별시장

기술용역에대한기술및가격동시입찰운영기준

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1995년 11월 5일

서울특별시장 조



기술용역에대한기술및가격동시입찰운영기준안

1. 제정이유

기술용역 지명경쟁입찰에 있어 업체간 담합등 회계질서 문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술 및 가격 동시입찰제도의 절차 및 운영기준을 제정 시행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현행 건설관련 기술용역의 2단계 입찰제도(국가물당사자로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1항)를 기술및가격동시입찰 방법으로 개선 시행함.

(1) 적용대상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공사와 관련된 1억5천만원이상 건설기술용역과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에 의한 3억원이상 기술용역으로 함(안 제2조)

(2) 사업주관부서에서 기술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 받아 입찰대상 적격업체로 선정된 업체의 가격입찰서에 의거 계약부서에서 낙찰자 결정후 계약을 체결토록함(안 제6조 내지 제9조)

(3) 기타 낙찰자의 결정, 입찰무효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10조 내지 제14조)

3. 관계법규

가. 관계법규 : 국가물당사자로는계약에관한법률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내무부와 협의하였음

라. 기 타 :

기술용역에대한기술및가격동시입찰운영기준안

제1조 (목적)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기술용역 기술 및 가격 동시 입찰을 실시하는 경우에 필요한 제반운영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기준은 서울특별시 소속 관서, 자치구 및 서울특별시 투자기관에서 발주하는 다음 각호의 기술용역에 적용한다.

1.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제38조및동법시행규칙제13조제1항에 의거 입찰참가자를 사전에 선정하여 집행하는 1억 5천만원이상 건설 기술용역
2.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령제4조에의거입찰참가자를 사전선정하여 집행하는 3억원이상 기술용역

제3조 (입찰공고) ①사업주관 부서의장은제2조의각호에서정한 용역을 입찰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계약부서의장과 협의, 다음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입찰공고를 하여야 한다.

1. 용역건명
2. 용역과업설명 일시
3. 입찰참가등록기한 및 장소
4. 기술제안서 및 입찰서 접수기한
5. 용역수행계획 및 주요과업내용
6. 총용역비 및 당해년도 예산규모
7. 사업기간
8. 입찰참가자격요건 등 구비서류
9. 기술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한다는 내용
10. 기타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기술 및 가격동시입찰 시행공고시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제35조제1항의규정에 불구하고 입찰서 접수마감일 전일로부터 기산하여 15일 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관 부서의장은 제1항 내지 제2항에의거 입찰공고를 한 후 지체없이 계약 부서의장에게 공고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 (용역과업 내용 설명 실시) ① 사업주관 부서의장은 기술제안서와 입찰서 제출 마감일 7일전에 입찰대상 기술용역에 대한 과업내용을 입찰참가 희망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② 용역과업내용 설명시에는 과업지시서, 신청안내서 등 관련자료를 입찰참가를 희망하는 용역업체의 대표자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 (입찰참가신청)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입찰공고통에 지정된 기한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계약관련 부서에 제출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사용인감신고서, 위임장 포함)1통 (별지1호서식)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3. 입찰보증금
4. 기타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서류

② 계약관련부서의장은 입찰참가 신청마감후 지체없이 사업주관부서의장에게 입찰참가 신청자 명단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입찰서제출 및 관리) ① 입찰참가신청자는 입찰서 제출일 마감시까지 용역수행계획서및 가격입찰서를 사업주관부서의장에게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의거 제출받은 가격입찰서(별지2호 서식)는 입찰서 보관용봉투에 넣어 밀봉하고 입찰자, 사업주관부서의장이 간인하여 계약부서에 인계시까지 금고등 밀폐된 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 (입찰참가 적격업체 선정) ① 사업주관 부서의장은 입찰서 접수 후 입찰참가적격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입찰참가 적격심사위원회는 입찰참가신청자가 제출한 용역 수행 계획서, 건설기술자의 능력, 용역의 수행실적 및 신인도 등을 고려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제13조별표5의 평가기준에 의거 입찰참가적격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8조 (계약요청) 사업주관부서의장은제7조제2항에의거 입찰참가적격자를 선정 후 3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경리관(분임경관)에게 계약을 요청하여야 한다.

1. 계약시행품의서
2. 입찰참가적격대상자 명단
3. 과업지시서
4. 용역비 산출내역서
5. 제6조제2항에 의거 보관하고있는 입찰참가적격 대상자가 제출한 가격입찰서

제9조 (입찰서 개찰 및 참관) 경리관(분임경리관)은 입찰참가적격자에게 개찰일, 개찰장소등을 개찰일 1일전까지 통보하여 입찰서 개찰에 참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 (예정가격결정 및 공개) ①제3조에의거 사업주관 부서의장의 입찰공고후, 경리관(분임경리관)은 기술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기한 7일전까지 기초 금액의 $\pm 2\%$ 상당금액 범위내에서 서로 다른 10개의 복수에비가격을 작성공표하여야 한다.

② 작성된 10개의 복수에비가격은 입찰서 개찰현장에서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된 자에게 공개한후 개찰에 참가한 입찰참가자가 그중 3개를 각각 추첨하여 그 평균가를 예정가격으로 결정한다.

③ 입찰서의 개찰참가자가 3인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입찰업무에 관여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대신하여 추첨하게 할 수 있다.

④ 다만, 추정가격이 10억원이상인 용역은 제1항내지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11조 (낙찰자 결정) ① 추정가격이 10억원미만인 용역은 국가를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3항에 의거 예정가격의 100분의 88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② 추정가격이 10억이상인 용역은 국가를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③ 낙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제7조에 의거 기술수행능력평가결과 우수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제12조 (재입찰통과 수의계약) ① 가격입찰서 개찰결과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 적격자로 선정된 자를 대상으로 재입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재입찰결과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7조 제2항의 평가결과 최우수업체순으로 하되 가장유리한 가격을 제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여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제13조 (입찰의 무효 등)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기술용역수행계획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2. 국가를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에 해당되는 입찰

제14조 (기타사항) 용역수행계획 안내 및 입찰공고일 제1조 내지 제12조에서 정한 운영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기술용역입찰유의서, 국가를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바에 의한다.

부 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우편번호 100 - 744 서울 중구 태평로1가 31 / TEL (02) 731-6252 / FAX (02) 731-6955

문서번호 회계 45101 - 4139

시행일자 1996. 10. 24.

경유

발음 법무담당관

참조

선결	법무담당관		지		
집	일자	1996. 10. 29.	시		
수	번호	4220	결	번재계집	
처	리	과	공		
담	당	자	공		

제목 기술용역 운영기준 제정안 시행의뢰

1. 우리시 기술용역에 대한 기술 및 가격통시입찰 운영기준 제정에 따른 예규를 시행하고자 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기술용역에 대한 기술 및 가격통시입찰 운영기준안 4부
방침서 사본1부, 끝.

회 계 과

중소기업시설자금지원시 추진지침중개정지침

-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시설자금 지원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아파트형 공장 건립사업, 시장재개발사업, 소규모점포시설개선사업의 용자한도를 상향조정하고, 구조조정사업추진자금을 추가지원하고자 지침을 개정함.
- 아파트형공장건립사업, 시장재개발사업, 소규모점포시설개선사업, 공동창고건립지원의 용자한도를 상향조정함.
 - 아파트형공장건립사업 : 20억원 이내 → 40억원 이내
 - 시장재개발사업 : 20억원 이내 → 40억원 이내
 - 소규모점포시설개선사업 : 2,500만원 → 3,500만원
 - 공동창고건립지원 : 9억원 → 15억원(필요시 5억 추가지원)
- 구조조정사업 추진자금 추가지원
 - 시설부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현행 시설자금외에 시설자금계정에서 운전자금을 추가지원함.
중소기업추진자금 2901억
대출금 외 연 7%
이정액까지 지원 (8.7.24)
- 기 지원업체 추가지원지침 소급적용
 - 96년도 자금으로 대출되었거나, 대출하기로 확정된 업체에 한하여는 추가지원조치 경과규정을 들.